

---

2 0 2 5  
국가연구개발

---

# 과제평가 표준지침

---

2025. 12. 개정





# 목 차

## I 표준지침 개요 1

1. 법적근거 .....	1
2. 지침의 목적 .....	1
3. 적용 대상 및 활용 .....	1
4. 용어 정의 .....	2
5. 평가방식 .....	6

## II 기본 방향 8

## III 주요 내용 12

1. 과제평가 세부기준 .....	4
2. 평가단계별 공통추진사항 .....	82
① 선정평가 .....	8
② 단계평가 .....	34
③ 특별평가 .....	8
④ 최종평가 .....	4

참고 1 | 전문기관 현황 .....

참고 2 | 과제 수준의 성과목표·지표 설정 방안 .....

참고 3 | 연구개발 단계별 구분 예시 .....

참고 4 | 연구개발 단계별 평가 주안점 .....

참고 5 | 경쟁형 R&D과제 관리 가이드라인 .....

참고 6 | 과제평가 Q&A .....



# I 표준지침 개요

## 1 법적근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별 부처에서 실시하는 연구개발 과제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토록 법에서 규정(연구성과평가법 제13조)
- ✔ 각 부처는 동 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과제평가를 수행(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 제17조)

## 2 지침의 목적

- ✔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고,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평가지침 표준화 및 평가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전 부처 과제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 ✔ 질적 지표 활용 및 정성평가 확대 등 사업평가의 정책 방향을 과제평가 수준까지 확대 적용하여 국가연구개발의 질적 수준 제고
- ✔ 연구개발과제의 적절한 기획관리 비용 확보 및 연구자 평가 부담 완화로 안정적 연구환경 마련

## 3 적용 대상 및 활용

- ✔ (적용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대상 사업에 속한 전 부처 과제에 공통으로 적용
- ✔ (활용) 연구과제가 수행되는 전주기(선정~최종) 평가에 활용

## 4 용어 정의

### ☑ 규정 및 과제관리

용어	정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부처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법령
통합정보시스템 (IRIS,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①과제지원시스템(PMS), ②연구비관리시스템, ③연구자정보시스템, ④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포함
국가과학기술종합 정보시스템 (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연구개발의 기획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제, 인력, 시설·장비, 성과 등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정보 시스템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따라 지정된 기관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전담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으로,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공동활용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유지·보관 및 관리하는 기관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형의 성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성과

## ☑ 연구수행 및 평가

용어	정의
기초연구*	어떤 특정한 응용이나 사용을 계획하지 않고 현상들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들의 근본원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행해진 실험적 또는 이론적 작업을 의미
원천연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활동
응용연구*	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적이나 목표를 지향하여 새로운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된 독창적인 탐구를 뜻함
개발연구*	새로운 제품 또는 공정의 생산이나 기존 제품과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해 연구와 실제적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거나 추가 지식을 생산하는 체계적인 작업
사전검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하여 참여 제한 대상 여부 등을 선정평가 전 단계에 검토하는 것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학술·기술·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수행 계획의 충실성, 연구자 또는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연구성과의 활용성 등을 평가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하는 것
단계평가	해당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 성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 등을 단계보고서를 통해 평가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
최종평가	연구개발 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 성과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
추적조사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

\* 프라스카티 매뉴얼 2015, OECD

\*\* 원천연구개념 및 비중산정(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09.8.27

※ (참고) '원천연구'의 범위

구분	연구단계별 연구유형(Research type)			
OECD기준	기초연구		응용/개발연구	
영국기준	전략연구(원천연구)			
	순수기초연구 (pure basic)	목적기초연구 (oriented basic)	전략응용 (strategic applied)	특정응용 (specific applied)
주요 연구성과	논문 등	논문, 개념특허 등	원천특허, 기술이전, 시작품 등	제품, 기술지도, 표준특허 등

<출처: 원천기술개발사업 평가 매뉴얼, 미래부, '16.5월>

☑ 평가방법

용어	정의
정성평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평가방식 - 정량화된 성과(양적 성과 및 질적 성과 모두 포함)도 정성평가의 근거로 활용 가능
정량평가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산출식에 의해 점수를 도출하는 평가방식 - 지표별 목표달성도 및 비용 점수 산출 등을 위해 활용 가능 - 성과의 특성에 따라 정량평가를 위한 지표는 양적 지표 및 질적지표로 제시될 수 있음

☑ 성과지표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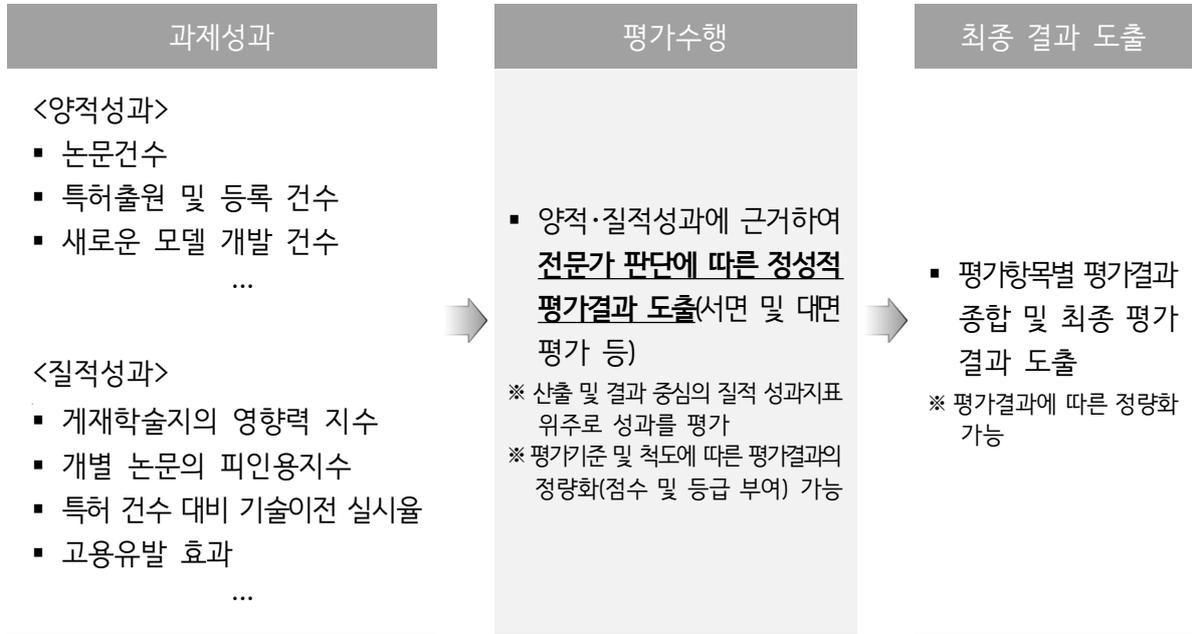
지표 유형	개념 및 유형분류의 예		비고
투입 지표	○ 연구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투입물(재원, 인력, 장비 등)에 관한 지표 예) 연간 연구비 총액, 투입된 석박사급 인력 수, 장비 수 등		-
과정 지표	○ 연구개발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지표. 원재료를 산출물로 전환하거나, 고객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추진된 조직 내에서 수행된 활동을 의미, 경우에 따라서는 산출지표와 혼용 예) 업무처리시간, 업무수행 착오건수 로드맵 이행률, 협력 활동 수행, 자료조사 등		
산출 지표	양	○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단순 양적 성과에 관한 지표 예) SCIE 논문 건수, 설계기술 확보 건수, 기술이전 건수, S/W등록건수 등	질적 성과 지표
	질	○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예)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질적 평가 값(K-PEG, SMART 값 등),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결과를 등급 등으로 지표화 등	
결과 지표	○ 사업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효과 성취 수준을 측정 가능한 지표 예) 기술수준 향상 정도, 핵심기술의 확보, 취업률, 기업성장률 등 성과목표 달성도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표		

<출처: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6차), 과기정통부, '2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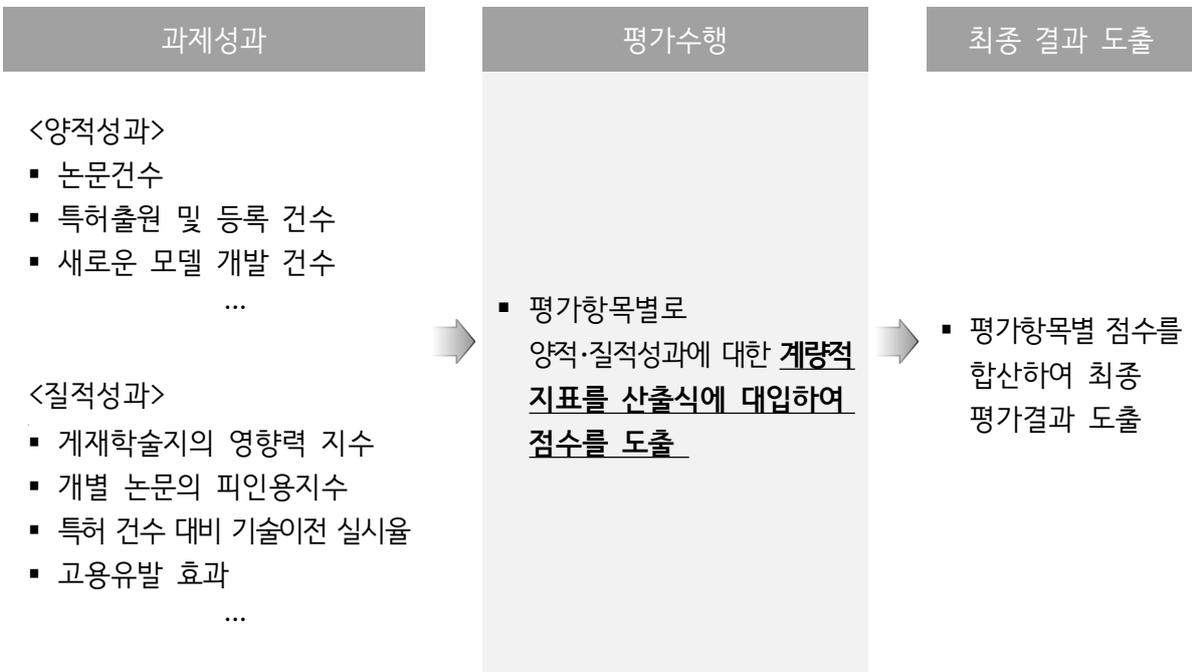


### 평가유형(정성·정량)별 평가방법 예시

#### <정성평가>



#### <정량평가>



※ 평가항목에 따라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는 혼용 가능

## 5 // 평가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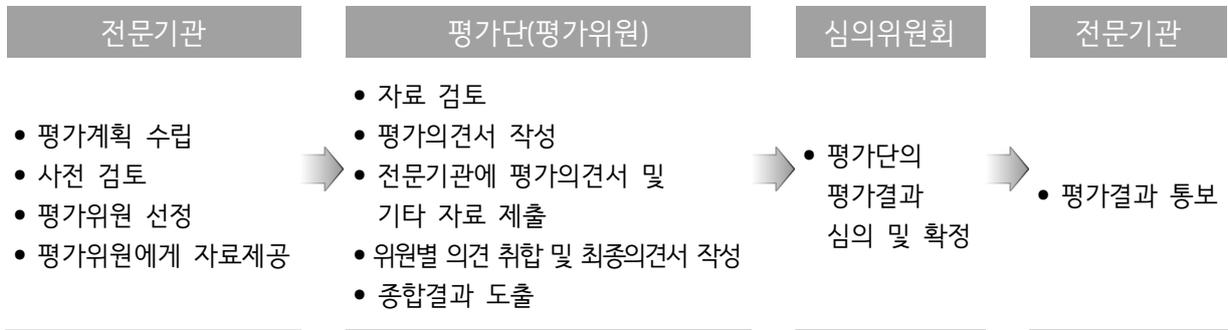
- ☑ 서면평가: 평가자가 자료(연구개발계획서 및 보고서 등)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서를 작성

※ 사전 검토는 신청자격 구비 여부, 참여 제한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로, 서면평가와는 구별됨



### 서면평가 예시

- 대상: 평가대상 과제수가 많은 경우 또는 대면평가 대상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
-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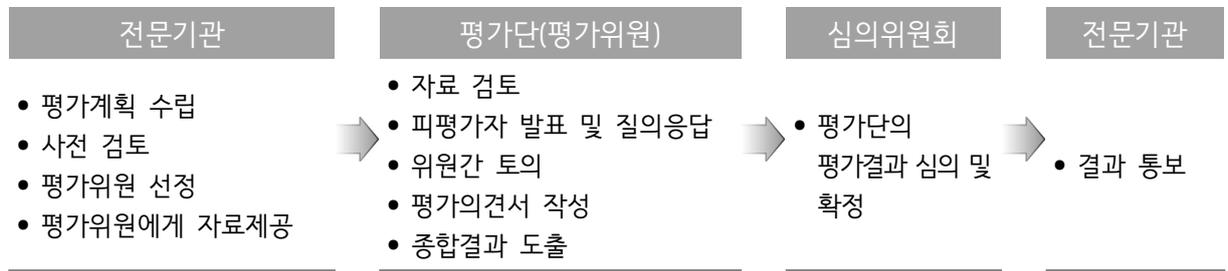


- ☑ 대면(발표)평가: 제출된 자료와 연구개발과제 책임자의 발표·질의 답변 및 평가위원 간 토의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의견서 작성



### 대면(발표)평가 예시

- 대상: 대부분의 과제 평가에 적용
- 절차:



- ☑ 온라인평가: 평가자가 별도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로드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서 작성

※ 온라인 시스템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평가 방식 포함



### 온라인평가 대상

- 국내외 전문가 및 해외석학 등 시간/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 대면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대면평가를 대체하여 실시
- 신청 과제 수가 과다하여 대면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 학문 분야가 상이한 과제의 대면평가 이전에 해당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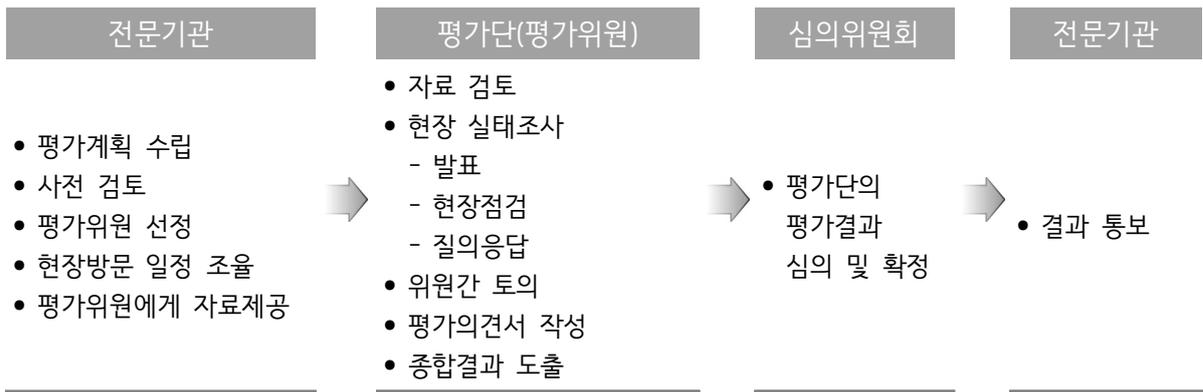
☑ **현장평가:** 연구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의견서 작성



### 현장평가 예시

- 대상: 연간 연구비가 일정 금액 이상의 연구 또는 연구시설 및 기자재 확보 정도의 확인이 필요한 과제와 현장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등

-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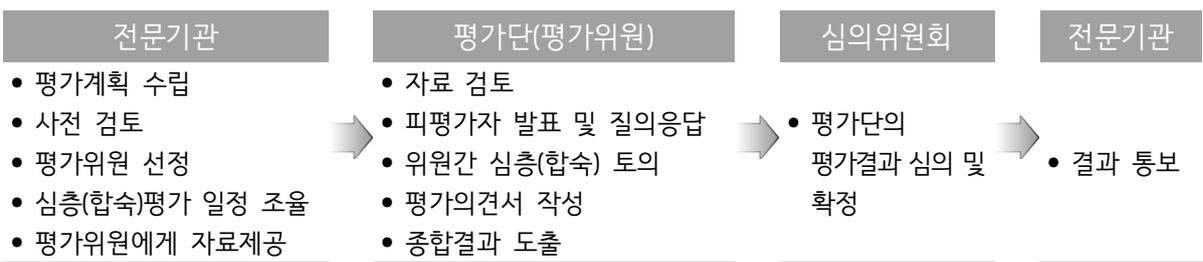
☑ **심층(합숙)평가:** 일정기간 동안 평가위원이 제출된 자료와 연구개발과제 책임자의 발표·질의 답변을 심층적인 토의과정을 거쳐 평가의견서 작성



### 심층(합숙)평가 예시

- 대상: 국가전략기술 등 국책과제, 대규모 과제(예 : 상위 1% 수준)과 같이 파급력이 커 심층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 등

- 절차:



## II 기본 방향

- ◆ 도전성·창의성 중심의 평가체계 혁신
- ◆ 연구과제 특성을 고려한 평가의 차별화
- ◆ 평가 전문성 강화 및 공정성·투명성 제고
- ◆ 연구의 내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정보 종합활용과 평가지표 개선
- ◆ 연구 몰입을 위한 연구자 부담 완화 및 자율성·책임성 강화
- ◆ 사업 성과목표와 연계된 질 중심 과제목표 설정
- ◆ 연구개발과제 기획평가관리비의 적정 확보

### ① 도전성·창의성 중심의 평가체계 혁신

- 연구자가 목표달성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유인책 추진
- 선정평가 시 기존 평가항목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분석을 토대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연구과제에 가산점 부여 등 적극 조치
- 단계·최종평가 시 연구과제의 수행과정과 성과의 우수성을 판단할 때, 수행의 성실성을 우선하여 평가할 것을 권고
  - ※ 장기적으로 목표달성도보다는 성실한 수행에 따른 연구 완료 여부를 중점으로 평가하도록 추진
- 평가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목표 미달인 경우에도 수행 과정 자체가 의미있는 연구의 경우 후속과제 적극 연계 등 인센티브 부여

### ② 연구과제 특성을 고려한 평가의 차별화

- 기초·응용·개발 등 연구개발 단계에 따라 중점 평가방식·방법·항목 등을 차별화하여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맞는 평가수행
  - ※ 과제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허성과는 평가단계별(선정-단계-최종)로 차별화하여 평가
-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과제를 분류\*하고, 유형별로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체계를 차별적으로 운영 가능

- \* (예시) 창의·도전적 연구 과정 자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유형의 '창의도전형', 목표달성도 중심의 정량 평가를 실시하는 '성과창출형', 문제해결과정과 사회적 효과 중심의 '사회문제해결형',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에 따라 수행하는 '혁신도전형' 등
- 과제 성격에 따라 합숙 등 집중·심층평가, 대표성과 중심 평가, 2단계 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식 도입·적용 가능

**과제 성격에 따른 다양한 평가방식 예시**

구분	심층평가	대표성과 중심 평가	2단계 평가
평가 유형	선정·단계·최종 평가	단계·최종 평가	선정 평가
대상 과제	전략기술, 대형과제 등 그 결과의 파급력이 커 심층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	사회문제해결형R&D, 기술사업화 과제 등 명확한 목표 성과가 있는 경우	연구의 아이디어, 창의성이 중요한 기초연구개발 과제 등
주요 내용	연구과제 주요내용의 세밀한 검토를 위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평가 수행	명확한 성과창출을 목표로 하는 연구과제의 핵심적인 대표성과 중심으로 평가 수행	간략한 제안서로 창의성 중심의 1단계 평가 후 통과과제 대상 상세 연구개발계획서 중심의 2단계 평가 수행

※ 위 내용은 평가수행 시 참고를 위한 예시로서, 구체적인 유형 및 평가방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가능

**③ 평가 전문성 강화 및 공정성·투명성 제고**

-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연구책임자의 평가위원 후보단 등록을 필수화하여, 우수·중견연구자를 평가위원으로 확충
- 전문기관 자체 명단 통합, 해외 과협 연계 등을 통한 해외 평가위원을 대폭 확충하고, 국제공동연구\* 및 혁신도전형 사업 등의 과제에 해외 평가위원을 적극 활용
  - \* 국제공동연구는 국내 정부,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외국의 정부, 기관, 단체, 및 개인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를 의미함(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2024.02)
-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모두 고려하되 전문성을 우선하여 선정
- 책임평가위원회 운영,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 우수 평가위원 우대 등을 통한 평가의 질과 연속성 유지

- 전문성 있는 평가를 위한 적절한 평가환경 조성\*과 평가과정의 투명성\*\* 제고
  - \* 평가위원회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강화, 충분한 검토시간 제공, 온라인 평가 확대 등
  - \*\* 평가진행과정에 대한 녹취 등을 통한 기록·보관, 공정성 등 문제 발생시 재검토에 활용
- 평가위원 실명제, 전체 평가의견 공개 등 평가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평가 책임성 제고와 평가결과 수용성 강화
- 이의신청 실질 검토율을 제고하고, 이의신청 검토위원으로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을 집중 검토

**④ 연구의 내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정보 종합 활용과 평가지표 개선**

- 단순 계산식에 따른 정량평가를 지양하고, 평가자의 전문적 판단에 기반을 둔 정성 평가 중심의 평가 실시
  - ※ 지표별 목표달성도 등 정량평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하여 추진
- 성과정보\*, 연구자 정보, 연구실적 등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하고 평가자는 해당 정보를 종합하여 정성평가 실시
  - \* 성과물 등록 정보(원문) 등을 통합정보시스템(IRIS)을 통해 평가위원회에게 제공
- 과제별 특성과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정성평가의 결과는 가중치 및 척도에 따라 계량화(점수화) 가능
- 우수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의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 적용

**⑤ 연구 몰입을 위한 연구자 부담 완화 및 자율성·책임성 강화**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한 정보 연계로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핵심적 연구내용 중심으로 평가자료 간소화
-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평가 시 연구책임자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검토
- 단계평가 시 연구 수행과정,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과제의 계속 진행 여부, 지원 연구비 증·감액 등을 결정
- 단계평가 시 다음 단계 계획에 대해서 컨설팅 중심으로 진행하고, 평가결과 및 연구책임자의 협의에 따라 과제목표·지표 수정 가능

⑥ 사업 성과목표와 연계된 질 중심 과제목표 설정

- 과제의 성과목표와 지표는 해당 사업의 사업유형, 성과목표·지표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참고2] 참고
-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궁극적인 과제목표 제시 및 달성 여부 평가(논문·특허 등 일률적인 성과목표·지표 설정 지양)
  - ※ 과제목표 및 지표를 포함한 성과계획은 연구개발과제 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 논문·특허 수 등 단순 양적 성과지표를 원칙적 폐지(지양)하고,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질적 지표 설정 확대

⑦ 연구개발과제 기획평가관리비의 적정 확보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는 “기획평가비 지급기준 일반원칙”에 따라 기획평가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
-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기획평가비를 업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Ⅲ 주요 내용

## ☑ 단계별 평가절차



※ 각 평가(선정/단계/특별/최종)의 결과심의 확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가 원칙.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

선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사전검토 요건을 만족하는 신청 과제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시한 평가항목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li> <li>• (평가항목) (필수)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개발 역량 / (선택) 과제의 파급효과 및 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 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차별화</li> </ul>
단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연구수행 과정과 결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토대로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과제의 계속 진행 여부 결정</li> <li>• (평가항목) 수행 내용 및 과정, 결과 및 목표달성 정도, 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성과 관리 및 활용 계획, 향후 수행계획 등</li> <li>•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 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불량 등급 부여</li> <li>• (평가결과 활용)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를 보완·변경·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 감액·증액 가능</li> </ul>
특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연구개발 기간 중 연구부정행위, 연구개발환경 변경, 연구자 신청 등의 사유 발생 시 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결정</li> <li>• (평가항목 및 방법)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항목 설정 및 운영 가능</li> <li>• (평가결과 활용) 평가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며,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또는 중단 가능</li> </ul>
최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연구개발 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하는 것</li> <li>• (평가항목) 수행 내용 및 과정, 결과 및 목표달성 정도, 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성과 관리 및 활용계획 등</li> <li>•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 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불량 등급 부여</li> <li>• (평가결과 활용)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 가능</li> </ul>

## 1 과제평가 세부기준

### 1 평가 전문성 강화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활용)** 평가단 위원 구성 시 관련 기술분야의 전문가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
  - \* 사업화 전문가(엑셀러레이터, VC 등), 법률전문가, 투자자문 전문가, 경제·인문·사회계열 전문가 등
  - 사업화 중심 과제의 경우에는 산업계 위원 또는 사업화 전문가 참여, 대형 연구 개발과제 또는 국제 공동연구개발과제의 경우는 국외 전문가\* 참여 권고
    - \* 공동기관형 국제공동연구 시 해외 연구기관 또는 외국 국적 연구자를 평가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혁신·도전형 사업(APRO)의 경우 적극 활용 권고
  - 시간/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는 전문가(예: 산업계, 국외활동 전문가 등)는 시간/공간적 부담이 적은 서면 및 온라인 평가를 통해서 활용
- **(평가위원 후보단)** 통합정보시스템의 평가위원 정보를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선정
  - 전문가 풀 확대를 위해 은퇴과학기술인 활용을 강화
  - 평가위원 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는 통합정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원칙적으로 동의 권고
    -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평가위원, 과제기획자 등
  - 대규모 과제, 사업단 과제 등 국가 R&D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는 평가위원 후보단 등록을 필수화하고, 평가위원으로 적극 참여 권고
    - ※ 협약 시 평가위원으로 참여에 대해 안내하고, 참여 시기, 횟수, 방법 등은 협약 시 부처, 전문기관과 협의
  -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과제기획자의 평가위원 참여 허용
  - 연구개발 단계에 따라 평가위원 구성 비율 및 선정 기준 다양화
    - ※ (예시) (기초연구) 창의성·도전성 중심의 학계·연구계 전문가 중심  
(응용연구) 다양한 시각에서 컨설팅 할 수 있는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 중심  
(개발연구) 제품화·사업화 중심의 전문가 중심
- **(평가위원 제척기준)** 필수 제척대상 위주로 적용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과제내용, 전문인력 구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 제척기준 적용 최

소화

- (평가위원의 전문성 우선)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에 대해서는 대학, 출연연, 과기출연연, 특정연의 최하위단위 부서(학과, 학부 등)까지 한정하여 제외 적용



**평가단 제척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구분	제척기준
필수 제척대상	①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선택적 제척대상	① 평가대상 연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③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부서(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하위 단위의 조직을 말한데에 소속된 사람
	④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분석·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

● **(평가위원 행동강령 마련)** 제척기준 완화 적용에 따른 이해충돌(상충) 행위 예방을 위해 평가위원 행동강령 및 서약서를 사전 작성

- (적용 범위)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모든 평가위원에게 적용
- (평가위원 의무) 평가위원은 피평가자와 평가위원간의 이해충돌(상충) 관계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이해충돌(상충) 관계확인 및 고지·회피 의무가 포함된 서약서 제출
  - ※ 부서 겸직 등으로 인해 이해충돌(상충) 관계가 발생한 경우도 해당사실을 고지
- (이해충돌(상충)의 기준) 평가위원은 피평가자와 평가위원 간의 금전적/직무적/인적 이해충돌(상충)의 관계 여부를 확인

▣ **평가위원 이해충돌(상충)의 기준**

구분	기준
금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최근 3년 이내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 또는 향후 예정인 경우</b></li> <li>• 피평가기관의 주식 또는 신주예약권 보유한 경우</li> </ul>
직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평가위원이 해당 과제에 공동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b></li> </ul>
인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 이내 공동연구, 사업 관계 경험, 고용주 및 상사 등 고용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li> <li>• 사제관계(지도교수-대학(원)생), 밀접한 학연관계 등이 있는 경우</li> </ul>

\* 표 내의 밑줄은 필수 사항이며, 타 기준은 과제의 특성과 평가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이해충돌(상충)의 기준 적용 기간은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함

- (위반시 조치) 평가위원이 이해충돌(상충)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시 과제평가는 물론 중간평가·기관평가 등 각종 정부 평가위원으로서 활동을 제한



**[참고] 이해충돌(상충) 방지 및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안)**

**< 평가위원 이해충돌(상충) 방지 및 청렴·윤리 실천서약서 >**

본인은 “과제명”에 평가위원으로서 참여함에 있어 피평가자 및 기관과 금전적/직무적인 이해상충의 관계가 없으며, 이해상충 관계에 있을 시 평가 전문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이해상충의 관계가 발생할 시 이해상충의 관계를 회피할 것과 과제평가단 위원으로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시, 평가위원 자격 박탈은 물론, 동 평가행위에 따른 제재와 손해배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입니다.

**< 이해충돌(상충)의 유형별 정의 >**

금전적 이해상충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이 연구 등 본연의 임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직무적 이해상충	연구자로서의 연구활동 등 고유 직무 외 역할(자문, 창업, 봉사, 외부활동 등) 수행이 연구자로서의 고유 임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인적 이해상충	연구자의 개인적 친분이나 갈등 등 사적인 인간관계가 연구수행, 평가,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이해충돌(상충) 관계 확인 및 청렴·윤리 실천 서약 >**

1. 본인은 최근 3년 이내 금전적인 이익 취득 또는 향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본인은 해당 과제에 공동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피평가자(또는 평가기관)와 최근 3년 이내 공동연구, 사업 관계 경험이 없습니다.
4. 본인은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성실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른 평가 내용 녹취 및 평가결과 공포 시 평가위원 명단 공개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평가과정에서 평가대상 기관과 발표자를 존중하며, 이들의 명예나 자존감을 훼손할만한 일체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평가수행을 통해 평가 대상 과제가 최고의 성과가 창출 될수 있도록 전문적인 질의·답변과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본인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 연구과제 정보, 연구책임자, 평가점수 및 기타 평가 주관기관의 장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평가 중은 물론 평가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8. 본인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는 순간부터 평가결과가 안내되는 시점까지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피평가자(기관), 평가위원 등 평가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직간접적(온/오프라인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9. 본인은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지 않았으며, 현재 관련 소송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다.

**< 피평가자 현황 >**

연번	연구책임자명	소속 기관	소속 부서

20 . .

소속기관:

소속 부서 :

직급 :

성명:

(서명)

- **(평가위원 '질' 관리 강화)**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적합한 우수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부적합 평가위원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 활용
  - (평가위원 추천)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선정전에 과제 신청자가 평가에 적합한 또는 부적합한 요건 제시 가능
    - ※ (참고) 미국 NSF 탁월성 평가(Merit Review) 평가자 선정
  - 평가자 선정 시 특정 혹은 일반적 과학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선정하고, 과제 신청자는 선정평가에 적합·부적합한 인물을 제안할 수 있음
  - (책임평가위원회) 평가의 연속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뛰어나고 성실한 선정평가위원을 단계·최종평가에 우선 참여



**관계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평가단의 구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 (평가위원 마일리지제 도입) 높은 전문성과 평가 역량을 갖춘 우수 평가위원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의 전문성, 성실성, 공정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마일리지 부여(IRIS)
  - ※ 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평가위원은 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평가위원 우선 추천 및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가능

## 2 평가과정의 신뢰성 제고

- **(평가 자료 작성)** 핵심적인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평가자료 간소화하며, 평가에 필요한 기본 자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규칙)의 표준서식을 활용
  - 선정평가의 경우 부처·전문기관·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한 평가 자료 분량에 대한 상한 기준을 공고 시 안내

- 연차보고서, 연구계획서 등의 분량 상한기준을 설정하여 작성 부담을 완화



### 혁신법 상 연구보고서 작성 분량 기준

- 국가연구개발과제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본문 작성 분량의 상한을 두어, 연구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부처(전문기관)의 평가역량 효율적 활용

구분	분량
연차보고서	총 20p 이하로 작성 ※ 단, 단계기간이 긴 경우 등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시, 단계보고서를 30p까지 연장하여 작성 가능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총 30p 이하로 작성

- 간략한 제안서 요약을 바탕으로 1단계 평가 후, 통과 과제만 상세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하는 2단계 평가방식 도입·확대
- (평가 공정성·투명성 제고) 평가과정을 공정·투명하게 운영하고, 평가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연구자가 평가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
  - 평가 진행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녹취 등을 통해 비공개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공정성 등 문제 발생 시 재검토에 활용하여 평가 투명성 제고
  - (평가결과 환류) 평가결과 통보 시 과제평가 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탈락사유, 미비점 등)하여 피평가자가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대한 컨설팅 기회 제공
- (사업심의위원회)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과제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 최종적인 판단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
  -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분야·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확정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
  - 연구자가 선정결과를 빠르게 지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통보 기한 등 기준 마련



**관계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평가결과 통보 범위**

- 평가결과 통보 대상
  - (선정평가) 과제수행을 신청한(탈락자 포함)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 (단계·최종평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 통보 방법
  - 평가절차 종료 시, 통합정보시스템(원칙) 또는 전자문서(공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내용증명, 통합정보시스템 등 보낸 일시와 받은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개별 통보
- 통보 정보의 범위

구분	선정여부	중단·계속여부	점수·등급	평가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의견*
선정평가	○			○	○
단계평가		○	○	○	○
최종평가			○	○	○

※ 평가위원 명단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필요

\* 익명화된 평가위원별 의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소수 분야로 평가위원이 특정되는 경우, 합리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종합의견으로 대체 가능

- (평가정보 공개) 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위원 실명제를 운영하고, 평가결과\*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가능

\* 평가위원별 의견(성명은 익명처리하고, 평가위원 개인정보, 연구 아이디어 유출 및 지적재산권 침해 발생 가능한 부분 등은 제외), 평가결과 등



### 관계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① 법 제14조제5항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선정평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2. 단계평가·최종평가·특별평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3 적절한 평가환경 조성

- **(평가시간 확대)** 평가위원이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사전에 제시하고, 충분한 검토시간 제공 후 평가 실시
  - ※ 외부 자료 공개가 어려운 과제의 경우 대면(발표)평가 당일, 발표 시작 전에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1시간 이상) 부여 원칙
  - ※ 단, 평가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평가 접근성 개선)** 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운 우수 평가위원의 참여 유도를 위해 대면(집합) 평가가 아닌 온라인 평가 확대
  - ※ (주요 적용 대상) 소액 자유 공모 과제나 신청 과제 수가 많은 경우, 해외 전문가 참여 등
- **(평가정보 사전 제공)** 평가위원이 평가대상 과제의 추진배경·목적·추진체계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 제공 강화

- **(적절한 보상)** 평가 자문비 외의 우수평가위원에 대한 보상(자문비 우대, 포상 등)을 강화하여 우수한 평가위원의 참여를 독려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동법 시행령의 ‘별표2’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이내에서 지급
  - 우수한 평가위원에 대한 포상제도를 통한 평가위원으로서의 사기와 명예 고양

#### 4 이의신청

- **(대상)** 피평가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평가의 평가절차, 결과(평가의견)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 기한)**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범위)** 이의신청 신청 가능 범위 완화, 범위 명확화 및 사전 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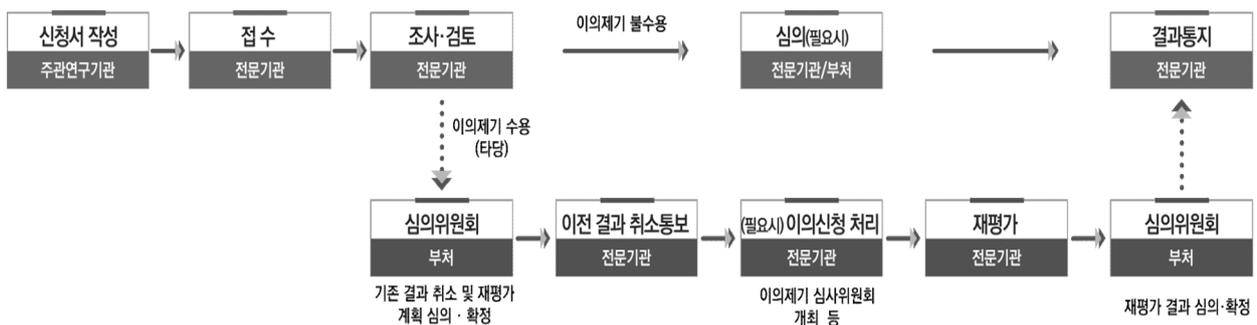
#### 이의신청 범위

-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 전문기관의 행정오류의 경우
-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평가방식(상대·절대·혼합, 서면·토론·발표, 블라인드, 평가단계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이의신청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과제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 후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
  - 이의신청 접수 시, 이의신청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내용에 대한 실질적 검토 없이 접수 반려하지 않도록 유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

- 이의신청 내용이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
- 이의신청 검토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보강하여 공정성을 집중 검토하도록 하며, 선정평가위원단이 구성 변경 없이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것은 지양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 재평가 실시
  - ※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당사자에게 기존 평가 결과의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하며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가
- 이의신청 처리 등이 완료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최종 확정

**이의신청 수용에 따른 재평가 절차 예시**



● **(이의신청 관련 기간의 계산)** 기간의 초일(첫날)은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익일로 만료하는 것으로 계산함(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을 준용)

- ※ (예시 : 이의신청 신청) 피평가자가 2023. 11. 14.(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여 10일 후인 11. 24.(금)까지 이의신청 가능
- ※ (예시: 이의신청 결과 통보) 전문기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2023. 11. 24.(금) 이후 30일이 되는 날은 12. 24.(일)이나, 일요일 및 공휴일(12. 25.(월))이므로 12. 26.(화)까지 이의신청 결과 통보



**관계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⑥ 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⑧ 평가단의 구성 기준,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5 평가등급**

- **(평가등급 부여)** 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우수/보통/미흡/극히불량 4단계로 등급을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
  - 혁신법에 따라 우수 등급 해당 시 후속 연계 등 인센티브가 가능하며, 특히 수행 과정 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불량으로 제재조치가 이루어짐
  - 과기정통부가 정하는 평가등급 외에, 성공/실패/성실실패 등 별개의 비공식 기준을 정하고 과제를 관리하여 연구현장에 혼란을 주는 일 지양
- **(평가등급 개편)**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하여 연구과제의 평가등급은 완료/미완료로 개편 예정((안) 1년 자율 시행 후 전면 적용 예정('27년))
  - 연구성과와 수행과정에 따른 등급제가 아닌, 수행과정 성실도에 따라 완료/미완료를 평가
  -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의미있는 수행과정을 거친 경우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완료는 현재의 극히불량 정도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짐



### 수행 과정의 성실성 주요 평가 기준(예시)

- 법령·협약 이행의 적정성과 수행 과정 자체의 적정성 등 검토

평가항목	주요 내용
법령·협약 이행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차·단계·최종 보고서 기한 내 제출 여부</li> <li>· 윤리·법규 위반 여부(예: 인건비 미지급, 데이터 위·변조, IRB미준수 등)</li> </ul>
과제 수행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계획 대비 과제 수행 내용의 일관성</li> <li>· 수행과정 상 어려움, 외부요인(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 및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li> <li>· 연구진행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연구노트, 연구모델, 실험자료, 논문, 특허 등의 유·무형 산출물 존재 여부</li> <li>· 중간 컨설팅, 학술 네트워크 활동 등의 활동 여부와 피드백 반영 여부</li> </ul>

## 6 과제 수준의 성과지표 설정

- 과제의 성과목표와 지표는 해당 사업의 사업유형, 성과목표·지표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참고2] 참고
- 과제의 성과지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 지표를 중심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
  - ※ 논문 수 지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특허의 질적 성과지표를 우선 설정할 것을 권고
  - 과제목표 및 성과지표는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자율적으로 검증하고, 단계 평가 시 질적 지표의 비율 단계적 상향 조정 허용
  - 기술목표의 달성 여부는 질적 지표의 일환인 정성 지표로도 판단 가능
  - 정성 지표는 검증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을 객관화하여 설정
  - 질적 지표 확대 방침을 신규과제 선정 공고문 또는 과제 제안요구서에 제시
    - ※ 양적 성과지표를 대체할 수 있고 과제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질적 성과지표를 지속 추가 개발



### 정성 지표 객관화 방안

- 수치를 활용한 측정이 어려운 경우, 등급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예) '우수연구 성과의 창출 수준'을 지표로 설정할 경우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등급화(등급별 정의는 사전에 사업담당자, 연구책임자 등과 협의하여 설정)
- 통계적 측정이 어려운 기술개발 목표라도 수치를 활용해 구체적으로 설정  
예) '태양전지 기술의 효율을 2020년까지 30% 이상 개선'(기술의 효율과 같은 개념은 사전에 사업담당자, 연구책임자 등과 협의하여 설정)



### 5대 성과 과제 질적 성과지표(예시)

- (과학적 성과) 학문 분야 편차를 보완한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피인용 지수 등
- (기술적 성과) 표준 특허, 3국 특허, 특허의 잠재적 가치(발명진흥회 SMART, 특허정보원 K-PEG 등), 국제 표준 채택 등
- (경제적 성과) 기술료, 매출액 기여, 수입대체 효과, 원가절감 기여, 고용 창출 등
- (사회적 성과) 해당분야 졸업자 수, 추가고용규모, 정책활용도, 언론 홍보건수 등
- (인프라 성과) 장비 공동 활용률, 성능 달성도, 시험 인증 통과 여부 등

## 7

### 적정 연구기획평가관리비 산정·활용

- 연구개발 소관 부처는 “기획평가비 지급기준 일반원칙”에 따라 기획평가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지원



### 기획평가비 지급 일반원칙

-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소요된 기존의 편성예산 대비 실집행 예산을 근거로 경직성 경비, 비경직성 경비(기획·평가·성과관리비)를 구분하여 차년도 기획평가비 산출

- 전문기관은 지원받은 기획평가비를 사용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



### 경직성 경비 및 비경직성 경비의 사용

- (경직성 경비) 전문기관의 전년도 인건비+경상비를 기본(base)으로 적용하고, 공공기관 인건비 공통인상분 및 기관운영 계획 등 기관특성을 고려하여 배분
- (비경직성 경비) 관리대상 사업유형(기술개발, 인력양성, 지역사업, 국제협력, 기타) 및 세부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소관 부처가 마련한 표준 요율 등에 따라 기획비, 평가비, 관리비를 산출
  - (기획비)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발굴을 위한 기술예측, 기술수요 조사, 특허 조사, 해외사례 조사 등 사업 및 과제 기획업무를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평가비)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과제공모·선정평가, 단계·최종평가 등 협약체결 과정 및 협약기간 동안의 사업과 과제의 평가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관리비) 과제관리,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 성과추적 조사 등 과제관리·성과확산을 위한 일련의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8 평가에 따른 조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를 보완·변경·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 감액·증액 가능(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최종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참여 제한(10년 이내)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33조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연구개발 성과 중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 가능(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 평가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목표 미달인 경우에도 수행 과정 자체가 의미있는 연구의 경우 후속과제 적극 연계 등 인센티브 부여



**관계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보완·변경·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증액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려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 2 // 평가단계별 공통추진사항

### 1 선정평가

#### 평가 기본방향

- 연구지원시스템의 성과정보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성평가 강화
-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른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하여 평가의 효율성 제고

- (평가목적)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과제 또는 연구수행기관(연구수행 책임자)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
- (사전검토) 연구개발과제에 지원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신청자격,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선정평가에 앞서 검토하는 단계



#### 사전검토 항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 기획 연구자의 과제 참여

- 기술분야(예: 신생기술 등) 또는 기획 참여 정도(예: 사전 현황조사 참여 등)를 고려하여 기획자의 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허용
- 단, 기획자가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기획 참여자 및 비참여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과제기획 결과물(과제제안요구서 또는 기획연구보고서 등) 사전 공시\* 등으로 정보 공개
  - \* 과제 공고 전, 해당 부처와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및 NTIS,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
- 최종 과제제안 요구서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기획자는 해당 과제에 신청 제한\*
  - \* 제한 범위(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등)는 전문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평가방식) 과제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한 평가방식\*을 선택하고,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및 효율성을 위해 적절히 혼합하여 활용

\* 본 지침 6~7쪽 참조

- (평가방법) 모든 평가항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정성평가 실시
  - 정책목표 및 사업 방침에 따라 일부 평가항목의 경우 정량평가와 병행 가능
  - 평가결과는 평가위원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의견과 함께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계량화 가능
  -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 진행 과정은 기록(회의록, 녹취록, 녹화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진행과정 기록·보관**

개인정보동의	- 평가위원 사전 개인정보 동의 시, 평가 과정에서 진행 과정을 기록·보관한다는 점과 활용범위, 기록 보관 기간 등에 대해 사전 안내 및 명시적 동의 절차 필요(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준용)
기록 방식	- 녹화·녹취 또는 회의록, 녹취록 작성 등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되, 회의 진행 내용과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록
정보보호	- 기록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고시* 등을 준용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평가결과 확정 후 최소 1년 이상 보관 권장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공공기관기록물법 등

- (평가시간) 평가위원이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제공
  - 원칙적으로 평가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시하여, 과제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제공 후 평가 시행
    - ※ 외부 자료 공개가 어려운 과제의 경우 대면(발표)평가 당일, 발표 시작 전에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2시간 이상) 부여 원칙
    - ※ 대면평가 시 중소형과제는 과제당 1시간 이상 제공하며, 심층평가가 필요한 국가적·전략적·대형 과제는 2일 이상의 장기·합숙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과제당 2시간 이상 발표·질의응답 시간 제공 권고
    - ※ 평가 과제 수, 인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평가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예시)

### <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평가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

본인은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평가 평가위원으로 위촉됨에 있어,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위원 위촉 및 후보군 관리, 이해관계자 제척·기피 등 공정성 확인</li> <li>○ 평가위원 수당, 여비 등 제반 경비 지급</li> <li>○ 평가 관련 안내 및 연락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li> <li>○ 평가 결과 통보 및 이력 관리</li> <li>○ 만족도 조사, 사업 안내 등 사후관리</li> </ul>
수집·이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 사무실), 이메일 주소</li> <li>○ 소속정보: 소속기관명, 부서, 직위</li> <li>○ 학력 및 경력사항: 학위, 전공, 주요 경력, 전문 분야, 연구 실적</li> <li>○ 자격정보: 국가연구자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li> <li>○ 지급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평가수당 등 지급 목적)</li> </ul>
보유·이용 기간	동의서 작성 시점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보유 기간(통상 X년) 또는 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까지 보유하며, 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평가위원 위촉 및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 2. 평가 과정 기록(녹음·녹화·회의록)에 대한 특별 동의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충실한 수행과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 과정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에 의거하여 참여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구분	내용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li> <li>○ 평가 관련 분쟁 또는 이의신청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및 근거자료 활용</li> <li>○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부 검토 및 감사 자료</li> </ul>
수집·이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성정보: 평가 과정에서 발언하는 음성</li> <li>○ 영상정보: 평가 과정 중 촬영되는 초상(얼굴 등 신체 이미지)</li> <li>○ 기록정보: 평가 과정에서의 발언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li> </ul>
보유·이용 기간	평가 종료 후 관련 사업 규정에 따른 보관 기간(통상 X년)까지 보유하며, 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위 평가 과정 기록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원칙에 따라 해당 평가위원 위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 평가 과정의 녹음·녹화 및 회의록 기록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상기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평가위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평가항목)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자 또는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등
  - 부처·전문기관은 과제 특성을 반영한 평가 절차 및 평가 기준을 과제 공고시에 공개
    - 과제의 목적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항의 필수 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설정
      - ※ (예시) 인프라 유형 과제의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의 타당성 및 연구장비 공동 활용, 연구실 안전관리를 필수항목으로 설정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평가 시, 합리적인 분석을 토대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연구과제로 판단되면 해당 항목 가산점 부여 가능
      -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이란, 아이디어 생성(idea generation)과 아이디어 검증(idea validation)의 결합으로 정의하며(Burbiel, 2009),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도전성을 수반하는 것이 창의성의 핵심으로 볼 수 있음(Amabile & Partt, 2016)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도전성 평가를 위한 주요 기준

- 기존 지식·기술과 연구 목표·과정·방법 등의 관점에서 명확히 구별되는가?
- 과학적·기술적으로 잠재적 가치가 있는가?
- 기존 지식·기술 대비 목표 수준이 혁신적인가(현재의 수준 대비 목표 격차 등)?
- 목표 달성의 위험요인, 실패 가능성 분석 및 해결방안이 구체적인가?

- 선정평가시 우대 및 불리한 대우 항목, 질적 지표 중심 지표 설정, 단계·최종평가 계획, 성과 증빙자료 제출 일정 등의 평가 절차 사전 공고
- 연구자 역량평가 시 이전 연구개발과제평가 결과, NTIS 및 통합정보시스템(IRIS)에 등록된 성과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것을 권고
- 과제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특허성과 관련 항목은 선택적으로 적용
  - ※ 특허성과를 활용한 기술이전·사업화 등의 실적과 연계하여 반영·평가(IRIS를 통해 과거 특허 및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제공)



**선정평가 평가항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3항)**

필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li> <li>-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li> </ul>
선택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li> <li>-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li> <li>-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연구개발 주제·목표·수행방식의 차이점 등을 평가해야 함</li> </ul> </li> <li>※ 유사·중복성보다 '차별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검증은 평가의 참고사항으로 활용하되 '차별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판단해야 함</li> <li>- 연구시설·장비구축 계획의 타당성</li> <li>-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li> </ul>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및 불리한 대우 항목 예시**

구분	기 준
우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 결과우수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li> <li>2.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li> <li>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높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li> <li>4. 기술실시를 통한 정부납부기술료 실적이 우수한 경우</li> <li>5. 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른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li> <li>6.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li> <li>7.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수요기업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할 실적이 있는 기업을 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경우</li> <li>8. 지속적으로(최근 3년 이상)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li> <li>9.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li> <li>10.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li> <li>11.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li> <li>12.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li> <li>13. 최근 3년 이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확인 받은 기술육성주체가 참여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li> <li>14. 지역 소재 대학 및 기업 등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li> </ol>
불리한 대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2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li> <li>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li> <li>3. 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3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리한 대우는 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상기 세 가지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li> </ul> </li> </ol>

\* 신청자격 검토 단계에서부터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

- **(평가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선정 여부, 익명화된 개별 평가위원 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제외)을 포함한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을 연구개발과제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
  - ※ 대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최종 평가 시 관련 전문가 집단(학회, 협회, 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반영을 권고



### 관계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① 법 제14조제5항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선정평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2. 단계평가·최종평가·특별평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2 단계평가

### 평가 기본방향

- 다음 단계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고,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과정
-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활용하여 평가 효율성 제고

- (평가목적) 단계종료 시 연구수행 과정, 연구결과, 향후 연구계획 등을 토대로 과제 진행 현황을 평가하여 과제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 계속 과제에 대해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지원
- (평가항목)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연구개발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
  - ※ 과제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되, 특허성과는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적용



### 단계평가 평가항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5.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 연구 수행과정 평가

기준	(관계법령) 과학기술기본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중간·최종평가: 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해 평가 - 평가결과 '실패' 과제 → 성실수행 평가를 통해 제재조치 면제여부 결정 ☞ 성과평가 → (실패 시) 과정 평가 → (성실수행 인정 시) 제재조치 면제
↓	
변경	(관계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단계·최종평가: 연구 수행과정과 성과를 동시에 평가 -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 ☞ 성과평가+과정평가 → (극히 불량 등급) 중단 및 제재조치



### 연구 수행과정 평가표 예시

평가부문	평가항목(배점)	세부 평가 지표	비고
연구수행 과정 (20)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행방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li> <li>-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연구목표 미달성 시 달성을 위한 재시도 여부)</li> </ul> </li> <li>수행과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노트 작성·관리 자체규정 지침 수립 여부 및 작성의 충실성</li> <li>- 각종 데이터 구축 및 운영의 체계성·충실성</li> <li>- 로드맵 수행의 적절성(계획 대비 일정, 연구비 집행, 시설·장비 활용, 인력 참여, 역할분담 등)</li> <li>- 과제 수행의 위험요인 및 연구환경 변화에 관한 관리여부</li> </ul> </li> </ul>	과정평가 의견 명확히 제시 필요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 과정에서 파생된 성과물의 기술성 및 사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수행과정에서 파생된 성과물의 기술성 및 사업성의 우수성(목표 미달성 경우에도 해당)</li> </ul> </li> <li>연구대상 및 방법의 도전성·혁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목표의 도전성</li> <li>- 새로운 분야·대상예의 도전성</li> </ul> </li> </ul>	

※ 단계 및 최종평가 시 연구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함께 평가하되, 특히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극히 불량' 등급의 경우  
 ① 연구수행과정의 부적절함에 대한 평가 의견과 ② 연구개발성과가 계획대비 미흡함에 대한 평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 **(평가방식)** 단계평가 시 적합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되, 향후 연구계획에 대해 컨설팅 중심\*으로 진행

- \*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계획,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등에 대해서 컨설팅 실시
- 평가위원을 통해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향후 연구계획을 평가하며, 필요시 대면(발표)평가 등을 실시

● **(평가방법)** 과제별 특성에 따라 정성평가와 함께 정량평가를 병행하고, 연구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실시

- 원칙적으로 정성평가를 통해 해당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와 결정 근거를 판단
- 정량평가는 연구 목표달성도 등의 평가항목에 일부 적용 가능
- 보안과제 및 총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의 경우 단계평가 면제 가능

- **(평가결과)** 단계평가 등급을 수행과정과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 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 등급 부여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 및 최종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음(시행령 제16조제2항)
- **(평가시기)**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기 전에 단계평가 수행을 권고
  - ※ 단계평가를 위해 단계보고서를 사전에 제출, 단계평가 이후 수정·보완된 단계보고서를 단계가 끝난 날까지 최종적으로 제출(시행령 제18조제4항)
  - ※ 과제 협약 시 연구자와 단계평가 시기 사전 협의 및 안내



**관계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이하 “단계평가”라 한다) 및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또는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으로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결과를 평가하도록 분류해야 한다.

- ③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2. 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④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차보고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2. 단계보고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
3. 최종보고서: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 **(평가결과 통보)** 단계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평가점수·등급, 익명화된 개별 평가위원 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제외)을 포함한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9조
-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 등을 결정
  - 단계평가 결과, “극히 불량” 또는 사업의 성과평가 관련 협약 조건\*(과제 특성에 따라 설정 가능)에 따라 과제중단, 지원 연구비 증·감액이 가능하며 예산 가용 범위 내 우수과제 인센티브 지원 가능
    - \* 예시 : 협약 제○조(평가에 따른 조치) ②단계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 이거나, 성과평가 결과가 하위 ○○% 또는 미흡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중단·해약될 수 있다.
    -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4항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할 경우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1호
  - 단계평가 결과 유사 연구성과가 개발되었거나 연구환경이 변경되어 연구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중단이나 연구개발목표,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 가능
    - ※ 단계평가 결과 ‘연구중단’인 경우 단계평가 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3 특별평가

평가  
기본방향

- 법에 명시된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 연구개발과제 특성과 평가사유를 고려해 평가항목과 방식을 자유롭게 설정·운영

- **(평가목적)** 연구개발 수행 중 참여제한 확정, 목표 조기 달성, 환경 변화 등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거나 연구책임자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의 정당성 및 타당성을 심사
- **(평가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결정
  - 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 \*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비 용도 및 기준 외 사용, 성과소유위반, 보안대책 위반, 국내·외 누설유출, 신청·수행 부정, 그 밖의 연구부정행위
  - ②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 ③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예시) 기술수요 변경, 국제 기술규제 개정, 유사 연구성과 개발 등
  - ④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의 목표 조기 달성 또는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요청, 이를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
    - ※ (예시) 총 연구개발기간이 3년이나 2년차에 연구개발목표 달성,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폐업 등
  - ⑤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위반 및 협약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예시) 협약서의 연구개발비 부담 납입기한 미준수, 혁신법 제35조에 따른 3책5공 위반, 대체 불가능한 연구책임자의 변경 등



### 혁신법 위반 및 협약의무 불이행 등의 경우

- 혁신법 및 예하규정 위반과 협약의무의 불이행이란, 단순히 법조문 및 협약문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외에도, 국회,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 특정평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적된 문제점 포함
- 해당 사항이 혁신법 위반 및 협약의무 불이행으로 지적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평가 수행을 통해 적정한 과제수행을 담보할 것을 권고

### ● (평가항목 및 방법) 평가 사유의 정당성 및 타당성을 중심으로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항목 설정하여 평가 운영 가능

- 평가항목은 혁신법에 해당하는 평가요건 외 연구기관(책임자), 수행 과제의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을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평가
  - ※ 특별평가 결과 연구과제 변경 및 중단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설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
- 전문기관은 특별평가를 실시할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특별평가 관련 사항\*을 사전 서면 통보
  - \* (포함사항) 평가시기, 사유, 소명자료 제출시한, 특별평가 결과로 과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등
-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특별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과제의 변경·중단 요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혁신법 시행규칙 서식 활용)
- 평가실시 시점에 따라 단계 및 최종평가와 통합하여 운영 가능하나, 평가의 목적과 내용은 상이하므로 평가결과는 각각 도출



### 관계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 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 및 중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
  2.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사유(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 **(평가결과 통보)** 특별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과제의 변경 및 중단 또는 계속 여부, 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 **(평가결과 활용)**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며, 평가 등급(우수-보통-미흡-극히불량)을 분류하지 않음
  - 특별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 추가 집행은 불가
    - ※ 평가결과가 과제의 계속 수행으로 결정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 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소급 지급 가능

-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가 중단되는 경우 그동안의 수행과정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종평가 실시



**최종평가가 필요한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31조제3항)**

- 연구개발 환경의 변경으로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평가를 실시해 과제가 중단되는 경우
-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목표 조기 달성의 사유로 과제의 중단을 요청, 이를 인정하여 특별평가를 실시해 과제가 중단되는 경우



**단계평가와 특별평가 비교**

구분	목적	시기	평가 등급	조치사항
단계평가	연구 성과평가	각 단계가 끝나는 때	우수/보통/미흡 /극히 불량	과제의 보완·변경·중단 ※ 과제 중단은 '극히불량' 등급일 경우 가능 (영 제17조1항)
특별평가	과제의 변경 및 중단 결정	사유 발생 시	-	과제의 변경·중단 ※ 연구개발비 추가 집행 중지

- 경쟁형 연구방식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단계평가 결과 공고된 연구수행 지속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단 가능
  -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제3항
  -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4 최종평가

평가  
기본방향

- 연구개발 과정 및 최종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과제 수행 내용에 대한 평가
- 우수과제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 우수 연구의 연속성 확보

- **(평가목적)** 연구 종료 후 최종 목표의 달성 여부, 연구수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구결과의 의의 및 성과 활용·확산과 관련한 의견 제시
- **(평가항목)** 대표 연구결과의 질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과제 수행 내용 및 과정, 연구목표에 대한 계획 대비 달성도, 연구결과 및 활용실적, 기대효과 등을 평가
  - ※ 단계평가와 동일하게 연구 수행과정과 성과를 동시에 평가(pp.34~35 참고)
  - ※ 과제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되, 특허성과는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적용



**최종평가 평가항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평가방법)** 과제별 특성에 따라 정성평가와 함께 정량평가 병행 가능
  - 해당 과제의 연구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위원이 정성평가를 통해 판단
  - 정량평가는 목표달성도 등의 평가항목에 일부 허용
  - 성과지표 설정 시, 논문이나 특허 건수 등의 단순 양적 지표는 원칙적으로 폐지(지양)하고, 필요 시 보조·참고 지표로 활용
  - 보안과제 및 총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의 경우 최종평가 면제 가능
    -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 **(평가결과)** 최종평가 등급을 수행과정과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 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 등급 부여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 및 최종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음(시행령 제16조제2항)
  - 과기정통부가 정하는 평가등급 외에, 성공/실패/성실실패 등 비공식적 별개 기준을 운영하는 것은 연구현장에 혼란을 주고, 효율적·통일적인 연구개발과제 관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특히 필요한 경우 외 지양
- **(평가 시기)** 연구개발 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수행을 권고
  - ※ 최종보고서를 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에 제출(시행령제18조제4항제3호)
  - 과제 종료 후 유의미한 성과가 발생한 경우\*, 피평가자의 요청과 평가위원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의 성과에 대해 보완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후속 과제 연계 등 인센티브 부여 가능
  - \* 연구개발과제 산출 논문의 대표 학술지 게재, 대규모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발생 등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통해 과제 종료 후 발생 성과 지속 확인점검 필요
- **(평가결과 통보)** 최종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평가점수·등급, 익명화된 개별 평가위원 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제외)을 포함한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 ※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9조
- **(평가결과 활용)**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제재 등 후속 조치를 과제 공고 혹은 사업·과제 추진 초기에 명문화하여 공개
  - 최종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 가능
  - ※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
  - ※ 후속 조치의 상세 내용은 부처·전문기관에서 과제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설정 가능
  - 목표 미달인 경우에도 연구수행 과정 자체가 의미있는 연구의 경우, 후속연구개발

과제 적극 연계 등 인센티브 부여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의 경우, 참여제한 또는 제재 부가금 부과 가능
  - ※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1호
- 연구환경 변화 또는 연구목표 조기 달성의 사유로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 과제가 중단될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최종평가 실시
  - ※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 ※ 평가절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최종평가와 특별평가 통합 운영 가능하나, 평가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므로 평가결과는 각각 도출해야 함



### 관계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2.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 참고 1 전문기관 현황



### 관계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연구재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한국보건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7.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0.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11.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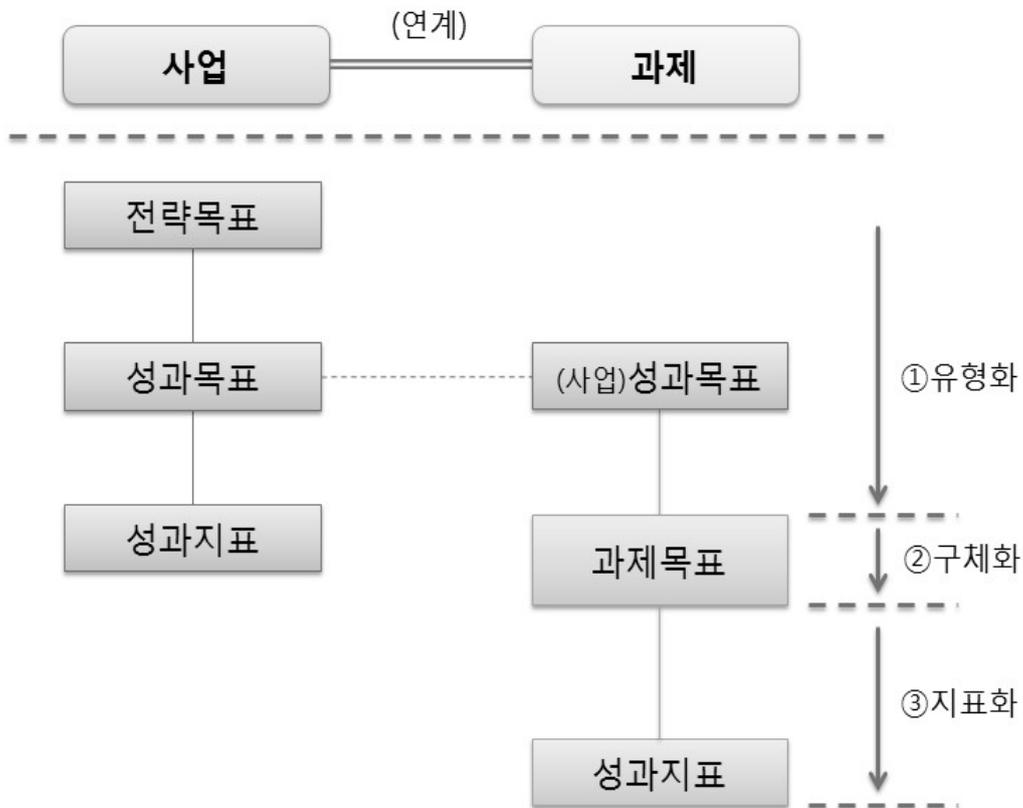
전문기관명	기능 및 역할	비 고	전화번호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개발 활동 및 인력양성	nrf.re.kr	042)869-6114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과제기획·평가·관리	keit.re.kr	053)718-811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자금, 인력, 장비, 자재, 방법 등 지원	tipa.or.kr	042)388-01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기획 및 기술예측	kaia.re.kr	031)389-63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khidi.or.kr	043)713-800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과학기술 수요조사·분석·평가	kimst.re.kr	02)3460-400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ipet.re.kr	061)350-97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 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keiti.re.kr	02)2284-1000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산업, 기상업무 분야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kmiti.or.kr	02)736-7365
한국콘텐츠진흥원	강소 콘텐츠 기업 발굴 및 육성	kocca.kr	1566-1114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 관련 연구사업 기획·평가·관리	kofons.or.kr	031)626-6121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분야의 과제기획, 선정, 추진과제 관리, 사후 관리 등 관련 업무	kofpi.or.kr	1600-3248

**참고 2** 과제 수준의 성과목표·지표 설정 방안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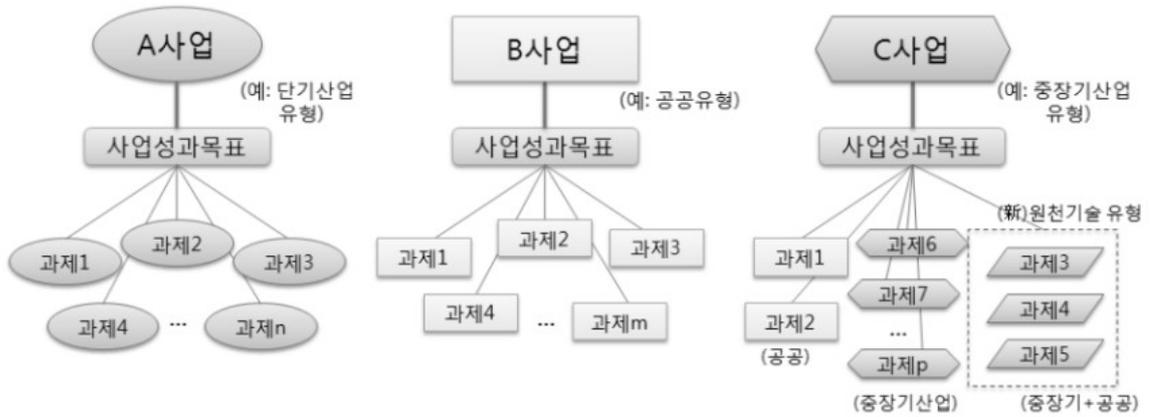
- 사업과 과제의 연계 관점에서 과제의 목표·지표는 과제가 속한 해당 사업유형 및 성과목표·지표 체계를 고려하여 설정

- ☑ 사업과 과제의 연계: 사업 목표·지표와 과제의 목표·지표 체계
  - ◆ 사업은 전략목표에 기반하여 성과목표가 설정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를 설정
  - ◆ 과제는 사업의 성과목표에 근거하여 과제단위 목표와 이에 따른 성과지표를 설정
  - ◆ 과제목표 및 성과지표는 유형화, 구체화, 지표화 단계를 거쳐 설정
    - ※ 과제목표지표를 포함한 성과계획은 과제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 과제목표·지표 설정 단계(1) - 과제 유형화

- ◆ 과제 유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에 제시된 R&D 사업유형을 참조하여 기본적으로 과제가 속한 해당 사업유형에 부합하도록 설정
- ◆ 단, 필요시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성과지표에 제시된 사업유형을 일부 재분류(또는 혼합)한 유형으로 적용 가능



☑ 과제목표·지표 설정 단계(2) - 과제목표 구체화

- ◆ 과제목표는 사업의 성과목표와 연결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설정
  - 과제목표는 과제를 통해서 도달하려는 기술 수준을 목표(가칭 기술목표)로 설정하거나 과제수행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산출하려는 유·무형의 성과를 목표(가칭 성과물 목표)로 설정
  - 과제가 다년도로 수행되는 경우, 최종 연도에 달성할 목표에 따라 기한 내 달성할 목표를 별도 설정

구분	정의
기술목표	연구과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기술수준 향상 정도를 제시한 목표 (예: 태양 전기 기술의 효율을 5% 상향시킴)
성과물 목표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물과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물의 달성 정도 제시한 목표 (예: 삼극 특허 1건 등록, 기술이전 3건 등)

### ✔ 과제목표·지표 설정 단계(3) - 과제 성과 지표화

- ◆ 과제 성과지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질적 지표를 중심 설정 권고
  - 기술목표의 달성 여부는 질적 지표의 일환인 정성 지표로도 판단 가능
  - 정성 지표는 검증할 수 있도록 측정 방법을 객관화하여 설정
    - ※ 과제목표 및 성과지표는 해당 분야 전문가 평가를 통해 검증하도록 하며, 단계평가를 통해 필요시 과제목표-성과지표 조정 가능

#### 정성 지표의 객관화 방안

- 수치를 활용한 측정이 어려운 경우, 등급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 예) '우수연구 성과의 창출 수준'을 지표로 설정할 경우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등급화 (등급별 정의는 사전에 사업담당자, 연구책임자 등의 협의로 설정)
- 통계적 측정이 어려운 기술개발 목표라도 수치를 활용해 구체적으로 설정
  - 예) '태양전지 기술의 효율을 2020년까지 30% 이상 개선'('기술의 효율'과 같은 개념은 사전에 사업담당자, 연구책임자 등의 협의로 설정)

- 성과물 목표의 달성 여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에서 제시한 5대 성과 분야의 질적 지표를 활용

#### 5대 성과 분야 주요 질적 성과지표(예시)

- (과학적 성과) 학문 분야 편차를 보완한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피인용 지수 등
- (기술적 성과) 표준 특허, 3급 특허, 특허의 잠재적 가치(발명진흥회 SMART, 특허정보원 K-PEG 등), 국제 표준 채택 등
- (경제적 성과) 기술료, 매출액 기여, 수입대체 효과, 원가절감 기여, 고용 창출 등
- (사회적 성과) 고용 유지 기간, 훈련 만족도, 지역 고용 증대, 정책 활용도 등
- (인프라 성과) 장비 공동 활용률, 서비스 만족도, 시험 인증 통과 여부 등

### 참고 3 연구개발 단계별 구분 예시

#### <예시 1 : 전자소재>

- ◆ (기초연구) 양자효과가 발생하는 영역에서 재료공정을 제어하는 연구
- ◆ (응용연구) 효율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해 무기/유기발광 다이오드 재료 및 부품을 개발하는 것
- ◆ (개발연구) 첨단 다이오드의 응용분야 발굴 및 소비자 기기 내의 사용을 목표로 하는 연구

#### <예시 2 : 나노기술>

- ◆ (기초연구) 전압 변화에 따른 물질 내의 전자 이동을 조사하기 위해 주사 터널 현미경을 사용하여 그래핀의 전기적 속성 연구
- ◆ (응용연구) 탄소 나노튜브의 적절한 배열과 구분을 위한 마이크로파와 나노 속성과의 열 결합 연구
- ◆ (개발연구) 마이크로 제조 연구를 활용해 조립라인의 핵심 부품을 바탕으로 이동가능 모듈형 마이크로 공장 시스템 개발

#### <예시 3 : 바이오·의료>

- ◆ (기초연구) 면역글로불린항체 배열의 새 분류법을 개발
- ◆ (응용연구) 다양한 질병 항체를 구분하기 위해 수행되는 조사
- ◆ (개발연구) 특정 질병의 항체 구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항체를 합성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실험적 치료를 받는데 동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성된 항체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실험을 실시하는 것

#### <예시 4 : 컴퓨터와 정보과학>

- ◆ (기초연구) 대량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일반 알고리즘 속성 연구
- ◆ (응용연구) 스팸의 전체 구조와 사업모델, 스팸 송신자들이 하는 일, 스팸을 보내는 동기를 파악하여 스팸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 ◆ (개발연구) 창업기업이 연구원들이 개발한 코드를 활용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개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

<출처: 프라스카티 매뉴얼 2015, OECD>

## 참고 4 연구개발 단계별 평가 주안점

### 연구개발단계별 평가 주안점 (예시)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 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기간의 경제·사회적 이익보다 과학적 지식 증진에 중점</li> <li>창의·도전성 강조</li> <li>상피제도 대폭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장기적 파급효과 및 실용화 증진에 중점</li> <li>후속연구 진행 등 성과 활용성 중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개선, 사업화 등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적용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력양성, 시설장비 등 다양한 과제유형에 대해서도 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li> <li>과제의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단계별 차별화하여 특허 성과 반영·평가</li> </ul>
선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액사업 대면(토론+발표)평가 면제 (온라인평가 확대)</li> <li>연구계획서 대신 이전 연구실적·성과 위주로 평가 가능(award방식) ※ 필요시 암맹평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역량·사회적 파급효과 위주 평가</li> <li>위원 구성 시 성과활용 전문가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점검 가능</li> <li>이해관계가 첨예할 경우 암맹평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의 특성에 따라 특허성과를 활용한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연계하여 평가</li> </ul>
단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액과제(예: 총연구비 1억 이하) 평가 생략 가능</li> <li>과정평가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 구성 시 산업계, 사업화 전문가 등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벤처, 중소기업 등 불안정한 환경에 있는 경우 단계를 짧게 설정하고 평가 가능</li> <li>성과평가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장비과제 현장점검 필수</li> <li>과제의 특성에 따라 기술이전, 사업화 연계가 가능한 특허성과를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달성여부 평가</li> </ul>
최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액과제(예: 총연구비 1억 이하) 평가 생략 가능</li> <li>과학·기술적 성과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성과 우수성 및 활용성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경제적 성과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장비과제 현장점검 필수</li> <li>과제의 특성에 따라 기술이전, 사업화 연계가 가능한 특허성과를 성과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여부 평가</li> </ul>

## 참고 5 경쟁형 R&D과제 관리 가이드라인

### 기본방향

-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쟁형 R&D를 운영·추진
- 각 부처에서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경쟁형 R&D 개념에 맞는 추진유형을 선택·개발하여 운영

- ◆ (평가방향)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독창적인 연구개발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단계별 마일스톤을 중점 검토
  - 비교 대상이 명확한 경쟁형 R&D의 경우, 평가 이의제기 가능성이 크므로 계량적 평가지표 활용 및 단계별 평가의 연계성 확보에 노력
- ◆ (대상분야) 경쟁형 R&D는 연구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고위험의 선도형 연구 분야에 적합
  - 결과물의 수준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단순 기술개발(예: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개발 등)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효과가 미미
- ◆ (평가기준) 경쟁형 R&D과제의 선정 및 운영 절차, 평가 기준을 과제 제안요청서에 사전 공지하여 과제 운영관리의 투명성·객관성 제고
- ◆ (선정평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사회 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 중심 과제 선정
- ◆ (단계평가) 사업/연구단 간 연구결과를 공개평가(토론식)\*하고 과제 선정 시 제시된 마일스톤\*\* 중심의 목표 달성 여부 평가
  - \* 상호심사와 토론 2단계로 평가: (상호심사) 연구자들이 경쟁상대의 과제평가에 참여(연구자가 평가점수 부여), (토론) 경쟁 연구자들이 각자의 연구에 대해 토론하고, 이에 대해 평가위원들이 평가
  - \*\* 마일스톤은 연구개발 단계별로 달성해야만 하는 주요 기술적인 실적을 작성하도록 하여 향후 단계평가·특별평가를 통해 계속/중단 결정을 위한 핵심자료로 활용

- ◆ (최종평가) 우수성과가 인정된 중도탈락 연구자에게 재도전기회를 제공하여 불이익 면제

경쟁형R&D 추진모델(예시)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토너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 프로젝트에 대하여 과제기획, 원천기술개발, 응용기술개발 전 단계별로 단계평가를 통해 차례로 일부가 탈락</li> </ul>	대형사업 중·장기사업
경쟁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기획단계에서 2~4배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기획연구를 수행토록 하고 기획 결과를 평가하여 실제 연구개발 수행기관 선정</li> <li>※ 경쟁방식은 연구비 규모가 작은 과제 기획단계에서만 적용</li> </ul>	대형사업 중·장기사업
후불형 서바이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의 연구단이 동일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최종 결과물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급*</li> <li>* 일반적인 연구비 지급후 연구수행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이후에 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후불형)</li> </ul>	소형사업 단기사업
병렬형 과제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연구목표로 서로 다른 접근방식의 과제를 각각 수행하고 단계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지원</li> </ul>	중소형사업 중·단기사업

※ 각 부처에서 경쟁형 R&D개념에 맞는 새로운 유형을 개발·운영 가능

## 참고 6 과제평가 Q&A

### 1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 Q1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해야 하는지?

- 지정 시 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선정평가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음
-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것

#### Q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 및 감점 기준과 방법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 우대 및 감점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의 목적, 내용, 특성에 따라 우대의 기준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유리 및 불리한 대우의 다양한 기준을 예시로 제시하였음

#### Q3

시행령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은 '연구개발기관'에 유리 또는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감점을 연구자에게 부여할 수 없는지?

- 혁신법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 협약의 당사자로 하고 있어 법리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유리 또는 불리한 대우를 하도록 하는 것임
- 한편 법 제10조제1항,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의 대상을 기관·단체·연구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적인 가·감점의 검토 및 부여도 기관, 단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함

#### Q4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로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있는지?

- 입법 취지, 규정 내용을 고려하면 시행령에 적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적용방법(감점 등)은 재량사항임
- 따라서, 사업 및 과제의 공고 시 불리한 대우(감점) 사항으로는 시행령 제12조제5항 각 호 이외의 사유를 명시할 수 없음

## Q5

과제(활용)담당관이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의 단서조항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 중 연구개발과제 기획·분석·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 다만, 과제 담당관의 평가 참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별 부처의 운영 지침·규정 등에 과제 담당관의 평가 참여에 대한 사항(평가 참여 목적, 범위, 역할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Q6

평가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인지? 또한 심의위원회 도입 취지는 무엇인지?

- 심의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절차로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등에 대한 기술적, 전문적인 사항은 평가단을 통해 판단하되,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라는 취지임
- 따라서 평가단의 평가결과만으로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까지 평가단에 위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

## Q7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사업별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

-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은 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중앙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간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취지를 살펴볼 때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의 업무는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 Q8

혁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은 과제의 주관기관 연구책임자만 가능한지?

- 이의신청은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위탁기관의 책임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이때,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함

## Q9

이의신청이 수용되어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어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 이의신청이 수용되어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존 결과 취소 및 재평가 계획을 심의·확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및 재평가 실시 후, 재평가 결과를 심의 확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이의신청 절차 등의 기준을 예시로 제시하였음

## 2 단계평가

### Q1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가 폐지됨에 따라, 다년도 과제를 연 단위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인지?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 단위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단계를 연 단위로 하여 매년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한편, 단계를 연 단위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혁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받거나 필요시 혁신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관련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연 단위로 과제의 진행 상황은 점검 할 수 있음
- 다만, 그 점검 결과를 근거로 과제의 변경 및 중단 등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 Q2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협약을 체결하고 연차평가를 실시 하여도 되는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1.1.1부터 시행되었음. 따라서, '21.1.1부터 시작하는 협약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협약기간으로 하여 체결되어야 함
  - ▶ 만약, 이미 연차협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협약기간을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하는 협약 변경이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평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가 종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었을 때 실시해야 하며, 연차평가제도는 폐지되었음. 따라서, 21.1.1 이후 연차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참고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전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다면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를 필요한 평가 주기에 맞게 구분하는 협약 변경을 통해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음

### Q3

연차평가 폐지 후 자체적으로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과제를 변경 및 중단해도 되는지?

- 과제의 성과 관리를 위한 진도점검, 중간컨설팅 등은 가능하나, 이를 단계/최종평가에 반영하는 등 성과점검 결과를 근거로 과제를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혁신법에 위배됨
- 그러나 성과점검 시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 실시 사유 발견 시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과제를 변경 또는 중단하는 것은 가능함

## Q4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제재처분을 한다면, 성실실패에 관한 규정은 사라지는 것인지? 과정의 극히 불량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 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제재사유로 두어, 결과만 불량한 경우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성실실패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음
- '과정'의 극히 불량 여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최종평가 시 '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와 함께 평가하여야 함

## Q5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를 함께 실시 후, 그 결과 "과제중단" 이 되었을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 단계평가와 특별평가 결과 "과제중단"이 되었을 경우, 단계평가를 통해 연구수행 과정과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단계평가를 최종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 Q6

단계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 이외에 과제를 중단할 수 없는지?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에 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 다만 혁신법 제15조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평가 절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Q7

단계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 제출하게 되면, 차단 단계평가가 시작되어 이전 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단계평가는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로 단계평가를 위해 단계보고서를 사전 제출하고, 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연구개발계획 등을 수정·보완하게 됨
- 단계보고서에는 향후 과제 수행계획이 포함되며, 차단계 연구수행을 위한 협약 변경 등을 고려할 때 단계보고서의 제출은 단계가 끝난 날까지 완료함이 타당함. 이때 단계보고서는 단계평가 이후 수정·보완 된 최종적인 단계보고서로 보아야 함
- 한편 최종보고서는 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 3 특별평가

#### Q1

과제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특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 참여제한 확정, 목표 조기 달성, 환경 변화 등 법에 명시된 특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바이며, 협약 당사자 간 상호협의를 통해 과제의 중요한 사항 변경 가능
- ※ 중요한 사항 :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 Q2

연구책임자의 장기 부재로 인한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 연구책임자의 장기부재 등에, 6개월이상 국내외 파견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혁신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만,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중요한 협약 변경의 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상호협약(실무상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임
- ※ 연구책임자 변경을 위해 특별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해외체류 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지 않을 수 있음

#### Q3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혁신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발생)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혁신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함
- 이에, 연구책임자가 제재처분을 받은 과제를 포함한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 대해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 Q4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모든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추가 집행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평가 실시 사유가 발생한 기관만 연구개발비 추가 집행이 불가능한 것인지?

- 혁신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연구개발비 집행 중지는 특별평가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기관만 대상으로 함

## Q5

과제의 변경 및 중단을 결정하는 자체 소관 위원회가 있는 경우 등 자체 소관 위원회의 평가를 특별평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해당 위원회가 시행령 제27조의 평가단 구성 요건에 부합하고, 법 제15조의 특별평가 사유에 의한 과제의 변경 및 중단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법 제15조에 의한 특별평가로 인정할 수 있음

## Q6

특별평가 이후 단계 및 최종평가를 부처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 단계평가를 거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관 부처가 최종평가 별도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단계평가로 같음할 수 있음
- 또한, 특별평가를 거쳐 중단된 과제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관 부처가 해당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필요성을 검토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Q7

특별평가 기간 중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기가 도래한다면 연구기간 산정 방법은?

- 특별평가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기가 도래한다면, 연구개발기간 만료 전에 협약 변경을 통해 특별평가가 소요될 기간만큼 연구개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특별평가 결과 “과제종료”가 아닐 경우, 특별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정상적인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장기간 소요되었다면 협약 변경을 통해 해당 기간만큼 연구개발기간 연장이 가능함

## 4 최종평가

### Q1

최종보고서의 제출기한과 최종평가 시기 및 공개기한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는 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때의 보고서는 최종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임
- 또한,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최종보고서 제출일 이후, 협약 종료일 기준으로 5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마치고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보완된 최종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 Q2

최종보고서 미제출시 최종평가를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지?

- 보고서 제출기한에 대한 안내를 재차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간 제출된 연차·단계 보고서, 연구노트, 기타 자료 등을 활용해 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극히 불량 등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 Q3

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을 받은 경우도 최종보고서 제출이 필수인지?

- 단계 또는 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을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보고서의 효용성 측면에서 필요시 최종보고서를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

- ◆ 인 쇄 I 2025년 12월
- ◆ 발 행 I 2025년 12월
- ◆ 발 행 처 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주관연구기관 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본 지침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평가혁신과 조경태 사무관
- 전화 : 044-202-6934
- E-mail : seulestrella@korea.kr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사업조정평가본부 R&D평가센터 김현식 연구위원
- 전화 : 043-750-2363
- E-mail : hskim@kistep.re.kr